#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544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정춘생·조 국·신장식

김재원 · 김선민 · 김준형

서왕진 • 차규근 • 황운하

박은정 · 강경숙 · 김종민

이해민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부세의 국가예산 계상의무,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지 방교부세 조절 및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교부세 차액의 정 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56.4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용을 통하여 해당 연도의 교부세를 일시 삭감하여 지방재정 여건이 크게 약화되었음.

이에 계상된 교부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해당 연도의 교부세를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현행 지방교부 세율을 최종적으로 내국세 총액의 24.24%로 상향하되, 국가 재정 상황 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예산 배분을 위하여 매년 1%씩 순차적으 로 인상하고자 함. 이를 통해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 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재정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4항ㆍ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1만분의 1,924"를 "1만분의 2,424"로 한다.

제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가는 해당 연도의 교부세를 감액 조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교부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 조절할 수 없다.
-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감액 조절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연도부터 다음 다음 연도까지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부세 재원에 관한 특례) 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총액의 비율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는 1만분의 2,024, 2026년에는 1만분의 2,124, 2027년에는 1만분의 2,224, 2028년에는 1만분의 2,324, 2029년부터 1만분의 2,424로 한다.

제3조(교부세 조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에 교

부하는 교부세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1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	
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	
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	
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	
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	
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	<u>1</u>
<u>만분의 1,924</u> 에 해당하는 금	<u>만분의 2,424</u>
핵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예산 계상) ① ~ ③ (생	제5조(예산 계상) ① ~ ③ (현
략)	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국가는 해당 연도의 교부세
	를 감액 조절하는 경우 제1항
	에 따라 계상된 교부세의 100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
	과하여 감액 조절할 수 없다.
<u>&lt;신 설&gt;</u>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감액 조절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연도부터 다음 다음 연도

<u>까지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u> <u>한다.</u>